

부속서 IV

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태국

1. 다음은 제9.2조(적용범위)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는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에 대하여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른 태국의 약속을 규정한다.
2. 태국은,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를 위한 허가를 받는 경우, 관련 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또는 규정될 수 있는 필수적인 비자, 기준 및 조건의 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 기준은 완전 납입 자본의 규모, 고용 창출, 외국인 투자의 범위, 수출 진흥, 기술 이전, 경영 특수성, 경제적 수요심사 및 노동시장 수요심사를 포함한다.
3. 모든 약속된 분야 또는 하위분야에서의 면허 또는 허가 취득에 대한 모든 조치는 부속서 II(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태국 양허표에 규정된다.
4. 다른 당사자들의 영주권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태국의 의무는 약속하지 않는다. 태국은 GATS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영주권자에 관한 자국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들은 이 협정을 통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는다.
5. 태국은 아래에 규정된 부록 가(분야별 구체적 약속) 및 인의 범주에 규정된 분야 및 하위분야를 제외하고,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자연인의 태국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 또는 그들의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 안함을 유지한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A. 단기 상용 방문자(BV)	
<u>정의:</u> 태국에 입국 또는 일시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연인으로 방문 기간 동안의 보수와 재정적 지원이 태국 밖에서 나오는 인.	신청하는 경우, 단기 상용 방문자에게는 도착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된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i)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로서 그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상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협상하거나 상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협상이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판매나 서비스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p> <p>(ii)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태국 내 법인¹을 위하여 오직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p> <p>(iii) 사업 협상 또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또는</p> <p>(iv) 태국 내에 투자를 설립하거나 상업적 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p>	
<p>부록 A에 규정된 금융 서비스 분야 및 하위분야와 관련하여, 상용 방문자는 사업 회의나 접촉에 참석하거나 서비스 판매 또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 설립체를 방문하거나 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을 목적으로 태국에 체류하는 자연인과 태국에 상업적 주체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연인으로 정의됨.</p>	<p>그러한 일시적 입국은 도착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최초의 기간 동안 허용되며 1년을 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음. 다만, 이민국과 고용부에 의하여 규정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함.</p>
<p>B. 기업 내 전근자(ICT)</p>	
<p><u>정의:</u>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설립된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태국에서 상업적 주체를 통하여 (대표사무소, 지점, 자회사 또는 계열사 중 하나를 통하여)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전근된 인으로, 이 항목의 “조건 및 제한” 열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연인.</p> <p>(i) 임원: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그 회사의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 임원은 그 조직의 실제 서비스 공급이나 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음.</p> <p>(ii) 관리자: 주로 그 조직, 부서 또는 하위부서를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 관리직 또는 전문직</p>	<p>신청하는 경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태국 밖에 있는 해당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었던 기업 내 전근자에게 도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최초 기간 동안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가 허용됨.</p> <p>그러한 일시적 체류는 매회 1년을 넘지 않는 3회의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음.</p>

¹ 이 양허표에서 “법인”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8.1조(정의)라호의 정의를 따른다.

범주내용	조건 및 제한 (체류 기간을 포함한다)
<p>종사자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음. 그 조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포함하지 않음. 또는</p> <p>(iii) 전문가: 서비스 수립 또는 제공에 필수적인 고급 전문지식을 보유하거나 그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 면허를 소지한 전문직의 일원을 포함할 수 있음.</p>	
<p>부록 가에 규정된 금융 서비스 분야 및 하위분야와 관련하여, 기업 내 전근자는 관리 또는 임원 직급의 기업 전근자 또는 전문가로 정의됨. 다만, 그러한 인은 그의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태국 밖에 있는 해당 법인에 의하여 고용되었고 이민국에 의하여 규정된 기준과 고용부에 의하여 규정된 경영 수요 기준²을 충족해야 함.</p>	<p>일시적 체류는 도착일로부터 1년의 기간으로 제한되며 매회 1년을 넘지 않는 3회의 추가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음.</p>

² 경영 수요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실이 관련 당국에 의하여 고려된다: 1) 전액 납입자본금의 규모, 2) 고용 창출, 3) 외국인 투자의 범위, 4) 수출 진흥, 5) 기술 이전, 6) 경영 특수성

부록 가
분야별 구체적 약속^{3,4}

태국은 다음의 하위분야에만 종사하는 단기 상용 방문자(BV)와 기업 내 전근자(ICT)에 대해서만, 각 특정 분야 및 하위분야에 대하여 명시된 조건 및 제한을 전제로 제9.4조(일시 입국의 허용)에 따른 자연인의 일시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자신의 약속을 확장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조건 및 제한
<p>1. 사업 서비스</p> <p>A. 전문직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 서비스(CPC 8672) <p>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서비스(CPC 841) ●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 842) ●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공중 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CPC 843) ●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공중 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함) (CPC 844) ● 그 밖의 컴퓨터 서비스: 고객사 직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훈련 서비스(CPC 849의 일부) <p>C. 연구개발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및 기술의 기초 연구 서비스(CPC 2.1버전: 8114) ● 언어학 및 언어의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 1.1버전: 81240) <p>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 또는 리스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기계, 건설 기계, 사무 기계류, 그 밖의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기계/장비류에 대한 임대 및 리스 서비스(CPC 83106-83109) 	<p>토목 엔지니어에 대하여 약속 안함</p>

³ 이 양허표의 서비스 분야 분류는 중앙상품분류(CPC) 번호의 부재에 의하여 달리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엔 통계사무소의 1991년 잠정 중앙상품분류 1.1버전 및 1.2버전에 근거를 둔다. 그 순서는 1991년 7월 10일자 GATT 문서 MTN.GNS/W/120에 사용된 서비스 분야별 분류 목록을 반영한다.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작성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Add. 1에 기술된 지침을 따른다.

⁴ 개별 CPC 코드에 대한 “**”의 사용은 그 코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그 코드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전체 범위까지 확장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조건 및 제한
<p>F. 그 밖의 사업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서비스(CPC 87110+87120+87190) ● 인터넷 광고 공간 판매(커미션 기반 제외함) (CPC 1.1버전: 8363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CPC 86401-86402) ● 경영컨설팅 서비스: 일반적 경영 컨설팅 서비스(CPC 86501) ●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1+86769) ● 농업 부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기술 전파에 관한 자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지 ▪ 종자 생산 ▪ 식물 보호 ▪ 수확 ▪ 등급화 ▪ 포장 ▪ 저장 - 토양 분석 실험실 - 토양 조사 및 토지 이용 계획 - 피복작물 종자 증식 ● 임업 부수 서비스(CPC 8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자문 서비스 ● 어업 부수 서비스(CPC 8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무역/수출 제품 서비스(중개인) - 품질 분석 서비스 - 캔포장 가공 분석 서비스 ● 기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 마케팅 연구 - 품질 관리 ● 석유 및 가스전에서의 채굴 부수 서비스 ● 관련 과학 및 기술 컨설팅 서비스: 수학자 및 통계학자의 과학 컨설팅 서비스 ● 컴퓨터를 포함하는 사무기계류 및 기기에 대한 정비 및 수리 서비스(CPC 84500) ● 장비의 정비 및 수리(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의 기계 및 장비(CPC 88620의 일부) ● 기타: 번역 및 통역 서비스(CPC 1.1버전: 83910) <p>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p> <p>C. 통신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 음성 전화 서비스 ● 전용 회선 서비스, 전용 네트워크 서비스 (CPC 75222) ● 전자메일(CPC 7523**) 	

분야 또는 하위분야	조건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메일(CPC 7523**)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검색(CPC 7523**) ● 공중 통신 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의 일부, 거래 처리는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통신단말기 임대 서비스(CPC 75410) ● 통신장비 판매 서비스(CPC 75420의 일부) ● 통신 컨설팅 서비스(CPC 75440) 	토목 엔지니어에 대하여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텍스트 ● 전화회의 ● 영화 및 비디오 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관측 또는 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영화 또는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CPC 96112**+96113**)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CPC 9613):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만을 위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CPC 96131**+96132**) 	
<p>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p> <p><i>A. 빌딩 관련 건설업(CPC 512)</i></p> <p><i>B. 토목 관련 건설업(CPC 513)</i></p>	토목 엔지니어에 대하여 약속 안함.
<p><i>C. 설치 및 조립(CPC 514+516)</i></p> <p><i>E. 기타</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현장에서의 선시공 작업(CPC 511) ● 전문 공사업(CPC 515) ● 빌딩의 건설이나 철거 또는 토목 작업을 위한 운영자를 동반하는 장비 임대 서비스(CPC 518) 	
<p>6. 환경 서비스</p> <p><i>A. 하수 서비스</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 시스템, 폐기물 처리, 유해 폐기물 관리, 대기오염 및 소음 관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 관리 서비스에 관한 환경 자문(CPC 9401**) ● 환경 보호 및 환경 저감 서비스(CPC 9401**) ● 하수 서비스(산업폐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함)(CPC 9401**) <p><i>B. 폐기물 처리 서비스(유해 폐기물 관리 및 소각로를 포함한다)(CPC 9402)</i></p> <p><i>C.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 9403)</i></p> <p><i>D. 기타</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산업 배출 저감을 포함함)(CPC 9404) 	

분야 또는 하위분야	조건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저감 서비스(CPC 9405) •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CPC 9406) • 그 밖의 환경 보호 서비스(CPC 9409) 	
<p>7. 금융 서비스</p> <p>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서비스(CPC 81211) • 손해보험 서비스(CPC 8129) 	<p>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부수 서비스(연금 조성 서비스는 제외함): 보험 중개 및 대리 서비스(CPC 81401) 	<p>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정함.</p> <p>개인 중개인 및 대리인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p> <p>중개인은 재보험 계약을 제외하고, 어떠한 인이 해외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 자문 또는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자문 서비스(CPC 81402) • 해손 및 손해 사정 서비스(CPC 81403) • 계리 서비스(CPC 81404) 	<p>보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고위 관리직, 전문가 및 기술사원에 한정함.</p>
<p>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 금융리스 •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지급 및 송금 서비스 • 보증 및 약정 •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상품 - 외환 - 환율 및 이자율 상품 - 양도성 증권 	<p>외국 은행 사무소별 외국인 직원 수에 관한 제한: (a) 대표 사무소로 운영 중인 은행의 경우 2인, (b) 외국 은행 지점의 경우 각 6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의 증권을 포함하여,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증권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⁵ • 다음의 자산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 집합투자 운용 	

⁵ 이 하위분야에 속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약속은 아래에 별도로 기재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조건 및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 및 위탁 서비스 •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⁶ • 금융 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의 경우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 중개 및 취급 - 양도성 증권에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 - 증권인수: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 투자 자문 	<p>외국인 직원의 수는 대표사무소의 경우 2인으로 제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 	<p>대표사무소의 경우에만, 외국인 직원의 수는 2인으로 제한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서비스(CPC 81133): 	<p>금융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는 한, 공공으로부터 자금 동원은 금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자문 서비스(CPC 81332) 	
<p>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p> <p>A. 호텔 및 레스토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숙박 서비스(CPC 64110) • 캠핑 및 캠핑카 야영지 서비스(CPC 64195) • 레스토랑 서비스(CPC 64210) • 케이터링 서비스(CPC 64230) <p>B.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 여행 알선 및 대행 서비스(CPC 74710)</p> <p>D. 기타: 호텔 경영 서비스(CPC 1.1버전: 63110의 일부)</p> <p>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p> <p>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놀이공원(CPC 1.1버전: 96910**)</p> <p>C.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 민간 도서관 서비스(CPC 96311**)</p> <p>D. 스포츠 서비스(CPC 96419에 명시된 그 밖의 스포츠 서비스는 제외함) (CPC 96411 + 96412 + 96413)</p>	

⁶ 이 하위분야에 속하는 증권회사에 대한 투자 자문에 관한 약속은 아래에 별도로 기재된다.

⁷ 증권회사란 상업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증권회사를 말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조건 및 제한
<p><i>E. 그 밖의 레크리에이션 서비스(CPC 9649**):</i> <i>레크리에이션 파크 및 해변 서비스</i></p> <p>11. 운송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운송(연안 운송을 제외한 CPC 7211) ● 화물 운송(연안 운송을 제외한 CPC 7212) ● 국제 예인(CPC 7214) 	선박 승무원에 대하여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운송 지원서비스(CPC 745**): 해안 수용 시설(선박 폐기물 또는 유수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수료 또는 계약 기반 철도 운송 장비의 정비 및 수리(CPC 8868) 	토목 엔지니어에 대하여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운송 서비스 지원서비스(CPC 7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 및 화물 차량 청소 서비스 - 철도역에서의 보안서비스 ● 냉동 또는 냉장 제품, 벌크 액체 또는 가스 및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된 화물 운송(CPC 71231-71233) ● 운영자를 동반하는 승용차 임대 서비스(CPC 71222) ● 운영자를 동반하는 버스 및 대형버스 임대 서비스(CPC 71223) ● 민간 소유 항구에서의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 창고업 서비스(CPC 742) ● 냉동 또는 냉장 제품의 창고업 서비스(CPC 74210) 	

**참조 문서
부록에 대한 주석**

이 부록의 목적상,

1. **연안운송**이란 이 양허표의 목적상 태국 수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장소와 태국 수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장소 사이에서 여객 또는 상품을 운송하거나 예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 **해상화물 취급 서비스**란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감독을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 또는 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 또는 하역
 - 화물의 고정 또는 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 또는 인도 및 보호